



의안 번호	제 8 호
의 결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 (제 3 회)

의
결
사
항

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
구성·운영계획(안)

국가지식재산위원회

제출자	국무총리실장 임종룡
제출 연 월 일	2012. 1. 31.(화)

1. 의결주문

- 「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연구 성과의 소유권 및 수익 배분 등에 대한 산·학·연 간 시각차가 산학협력연구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,
- 공정한 산학협력 연구·개발 문화를 확산하고 협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(목적 및 기능) 산학협력연구 협약의 틀과 기준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·보급하여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정착
- (구 성) 관계 부처(교과부, 지경부, 국과위, 특허청), 분야별 전문가(산업계, 학계, 연구계), 법조계(변호사, 변리사) 등 15인 이내로 구성
- (운 영) 특별전문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부터 10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
4. 향후계획

-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('12.2월)
- 관련부처·기업·대학·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('12.2~6월)
- 가이드라인(안)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('12.7~10월)
- 가이드라인(안) 확정, 지재위 상정·의결 및 발표('12.11월)

산학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(안)

2012. 1. 31.

1. 추진배경

- 산학협력연구 성과의 **소유권 및 수익 배분** 등에 대한 산업계·학계·연구계 간 시각차는 **협력 연구·개발 활성화의 주된 장애요인**으로 작용
 - 지재위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 **산학협력 R&D의 양적·질적 성장**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간 협력연구 **협약제도의 개선**을 모색함으로써
 - 공정한 산학협력 연구·개발 문화를 확산하고, **연구·실험실 (Research Lab)과 시장(Market) 사이의 간극**을 줄여 산학협력연구를 기초·원천·핵심 기술 등 **강한 지재권 창출의 장(場)**으로 승화

2. 현황 및 문제점

□ 추진경과

- 지경부, “**산·학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T/F팀**” 구성·운영('09.9~)
 - * 지경부, 대학(산학협력단장 협의회), 기업(산업기술진흥협회), 연구기관(Knowledge Works, 법무법인 태평양)
- 지경부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(총리실)에 협약 가이드라인 보고('10.5.6, 5.18, 6.1, 7.15) 후,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를 거쳐 **가이드라인 초안 마련**('10.7.22)
 - 학계·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**가이드라인 최종(안)**을 작성('10.8.26, 10.13) 하였으나, 대학측의 권리강화 요구, 강행 규정적 성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**최종 합의도출 무산**('10.11.3)

□ 문제점

- (**대표성 문제**) 산업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학계는 산학협력단장 협의회를 통해 의견 개진 및 협의에 참여하였으나, 협의과정에서 **참석자의 대표성 및 일관성 확보가 미흡**

- (관계부처 역할) 교과부, 지경부가 기업 및 대학의 현저한 시각차를 조정하고 **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계 노정**
- (공감대 부족) 양자간 협력연구시 **상호 공생발전을 위한 공감대가 부족**하고, 비교 열세에 있는 **군소대학, 중소기업** 등에의 협력연구 참여확대를 위한 **배려가 결여**되어,
 - 실제 가능한 것 보다 **낮은 수준(low-level)*의 협력만**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
 - * 우리나라 기업의 산학공동연구 비중은 21%(’06)→16%(’07)→6%(’08)로 감소 추세(’10년, 지경부 산·학공동연구 합리화를 위한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(안))
- (산연협약 문제) 산학협력연구 논의과정에서 **산연협력연구역시, 지적권 소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분야**로 대두
 - 지적권 소유 분쟁 등으로 연구소가 **핵심 지적권의 창출을 기피** 또는 지연시키는 경향이 **문제점**으로 지적

3. 목적 및 기능

□ 목 적

- (공정한 협력) 관련 부처· 이해관계자의 **관점 및 합리적 요구사항을** 재수렴하여 **공정하고 수용가능한 연구·개발 활성화 방안** 수립
- (지식재산 강화) 기업·대학·연구소 간 **개방형혁신 연구 생태계** 촉진 및 **공생발전 도모**를 통해 산학연협력연구가 **국가지식재산 전략 핵심 축의 하나로**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논의
- (가이드라인) 산학연협력연구 협약 시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주요 항목들에 대한 **협약의 틀(framework)과 기준(criteria)을 담은 계약체결 가이드라인**을 마련·보급하여,
 - 협력연구의 **양적·질적 확대**를 도모함으로써 **상호간 Win-Win**은 물론, 우리나라 **R&D 성과 전반의 향상** 및 **지식재산 경쟁력**을 제고

□ 기 능

- (가이드라인) 산학연 협력연구 계약 협상 시 기업, 대학, 연구소가 **상호 준거(mutual reference)로** 활용 가능한 **가이드라인 및 모범계약서** 마련
 - i) 협약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**모든 계약조건 항목**을 도출
 - ii) 국내외 **관련 법규 및 시장환경** 등을 고려한 **객관적 기준** 제시
 - iii) 협력연구 계약의 **국내외 모범 및 성공사례** 제시
 - iv) 비교 열세인 **군소대학, 중소기업** 등의 **참여율 제고 방안** 반영
- (보급규범) **사적(계약) 자치의 원칙과 협력연구 활성화**를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**가이드라인의 규범형태**로 결정
- (활용방안)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기업, 대학, 연구소 간 R&D 계약에 **적극적·실질적으로**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**효과적 활용방안** 수립

4. 위원 구성

- (구성)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는 전문가로 구성(15명 이내)하되,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
- (위원장) 국가지식재산위원회 **민간위원** 또는 **관련 전문가** 중에서 위촉
- (위원) **관련 전문가, 관계부처 및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장급 공무원**으로 구성
 - 정 부 : 교육과학기술부, 지식경제부, 국가과학기술위원회, 특허청, 지식재산전략기획단(간사)
 - 산업계 :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
 - 학 계 : 선도대학 및 군소대학 산학협력단장 등
 - 연구계 : 출연연 관계자
 - 기 타 : 변호사 및 변리사 등
- (임기) **특별전문위원회 존속기한까지** 활동

5. 위원회 운영

□ 운영 개요

- (회의시기)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- (존속기한) 위원 위촉 시부터 10개월('12. 2월~11월)
 - ※ 계속 운영이 필요한 사유 발생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 연장
- (참석범위) 특별전문위원회 위원 외에도 상정안건의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인사 참석

□ 운영 방향

- 용역기관 활용 등을 통해 **국내의 자료·사례 분석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**하고,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**특별전문위원회 안건 사전 배포**
- 산학연을 총괄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**산학, 산연(학연, 산학연 포함) 등 주체별 협력연구**를 개별적으로 논의하되, 시급성과 실현가능성(feasibility)을 고려하여 **우선 추진 Agenda**를 선정하여 논의

6. 향후 계획

일 정	세부 내용	비 고
2월	◦ 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	
2~6월	◦ 관련부처, 대학,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조정	정책연구용역, 국내의 법령 및 사례 조사·분석
7~10월	◦ 가이드라인(안)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	
11월	◦ 가이드라인(안) 확정, 지재위 상정·의결 및 발표	필요시 가이드라인 확정 및 발표시점 제조율